

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구비 서류

1. 본인(수급자격인정신청자)만이 부양할 수밖에 없음을 입증할 서류

- 부양 대상자 가족관계 증명서
- 본인(수급자격인정신청자)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원들의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
 - * 다른 가족원이 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
 - * 다른 가족원이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
- 가족원들의 주민등록등본
 - * 본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기타 본인만이 부양해야 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

2. 부양하여야 할 가족(부모)의 소득증명원 1부

- 부모가 고령인 경우(만 65세 이상)로서, 소득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함

3. 퇴직자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

- 퇴직자의 거주지 이전 시기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

4. 부양하여야 할 가족(부모)의 장애사실 증명원 1부

- 부모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
지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이 입증되어야 함

※ 유의사항: 고용보험법 제116조, 제118조에 의거,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